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8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7. 22

제안자 : 운영위원회

## 1. 제안이유

- 2008. 5.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직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행정위원회 소관 창의혁신단을 삭제  
(안 제3조 제2항)
- 나. 위원회 조례의 “간사” 명칭을 “부위원장”으로 변경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62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사전합의 : 필요 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2호 마목의 “창의혁신단 소관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

제11조 중 제목과 제1항의 “간사”를 각각 “부위원장”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간사는”을 “부위원장은”으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행정위원회 가~라. (생략) 마. <u>창의혁신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바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11조(간사) ①위원회에는 <u>간사</u> 1인을 둔다.</p> <p>②<u>간사</u>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<u>간사</u>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가~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&lt;삭제&gt;</p> <p>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부위원장)①-----<u>부위원장</u>-----.</p> <p>②<u>부위원장은</u> ----- -----.</p> <p>③----- <u>부위원장이</u>----- -----.</p>